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정	1996. 3. 1.
개정	2001. 3. 20.
개정	2002. 6. 25.
개정	2006. 3. 1.
개정	2012. 3. 1.
개정	2014. 6. 1.
개정	2016. 3. 1.
개정	2018.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학생 소속 지도교수가 참석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학생지도 실무자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의 임명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참석한 위원은 사안이 종료되면 임기가 만료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회 회칙 및 조직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내규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자치활동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내외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8조(의견청취) 제7조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교직원 및 학생을 출석하게 하여 관련사항을 청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서면결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 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